

동향

코로나바이러스19관련 노동권익상담사례

· 전남도내 노동단체 및 상담관련 기관 등의 접수사례와
전국현황 스케치·

- I. 전남 사례현황
- II. 전국 현황(갑질119)

1. 전남 사례현황

□ 코로나19(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)확산위기와 노동권익침해

- 코로나19(국내 감염병 위기 경고 '심각'단계)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진행
- 전남은 코로나19 확진자 9명(6명 격리 중, 3명 격리해제)으로 발생률 0.48로 가장 적은 지역(제주 9명, 발생률1.34)
 - 대구, 경북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만 여명 확산 조짐 속에서 전남은 청정 지역이기는 하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의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됨
 -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(식당 등),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부진으로 단기임시직(아르바이트) 등 비교적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노동인권 침해사례 발생

구 분	확진환자(누진)	완치(격리해제)	치료 중(격리 중)	사망
전국	9,661	5,228	4,275	158
서울	426	92	334	0
강원	36	21	14	1
경기	463	160	298	5
경남	95	65	30	0
경북	1,298	772	488	38
광주	20	13	7	0
대구	6,624	3,837	2,676	111
대전	34	17	17	0
부산	118	87	28	3
세종	46	12	34	0
울산	39	20	20	0
인천	58	15	43	0
전남	9	3	6	0
전북	13	7	6	0
제주	9	4	5	0
충남	127	83	44	0
충북	44	21	23	0

[출전: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국내 발생현황' 질병관리본부 (2020.3.30.기준)]

□ 코로나19 관련 노동 상담사례

○ 전남노동인권센터에서는 3월 17일~3월 26일까지 민주노총전남본부, 한국노총전남본부 및 전남 도내 소재 노동상담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상담 사례를 수집

- 총 10건 집계, 상담유형은 아래와 같이 지원정책문의, 무급휴가, 연차강요, 노동조합 활동방해, 불이익, 임금삭감 등임

구분	연차강요	임금삭감	불이익	무급휴가	노동조합활동방해	지원정책문의	합계
상담건수	2	1	1	2	1	3	10
소계(%)	20	10	10	20	10	30	100(%)

[상담유형에 따른 분류]

- 업종유형은 음식점 서비스, 운수, 제조업 등임

구분	서비스	음식점	운수	제조	합계
상담건수	3	3	2	2	10
소계(%)	30	30	20	20	100(%)

[업종에 따른 분류]

○ 연차휴가 강요사례

○○의 영양사로 재직 중 휴가를 얻어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지역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,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자가 격리를 지시하고,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자가 격리 동안의 일수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타당한지

-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도 없고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노무 제공을 거부하면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.
- 특별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, 평균임금 70%인 휴업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함

○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삭감 사례

○○식당에서 설거지 및 서빙 일을 하는 20세 아르바이트 청년, 코로나 19때문에 식당에 손님이 없어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이른 시간(저녁 8시)에 퇴근하라고 하면서 급여도 삭감시킬 예정이라고 함

- 소정근로시간을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급여를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은 삭감은 법 위반임

○ 무급휴직 사례

식당 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. 사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없어 식당 영업이 어려우니 당분간 휴업한다고 해서 당연히 그럴 줄 알고 무급휴직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, 직원 몇 명과 함께 휴업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데, 속은 것 같아 속상하고 억울한데 이럴 때 당사자인 저는 모른 척 계속해서 무급휴직상태로 지내고 있어야 하는지?

- 사용자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 휴직 강요 및 일방적 휴직 조치를 할 수 없고,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손님 감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 대상임
- 사용자는 무급휴직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
- 만일, 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에 규정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 근무 중인 동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통상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음

○ 예약취소·고객감소로 무급휴직 권고하는 관광버스업계 사례

- 계절 상 성수기로 호황을 누리야 는 관광버스 업계의 경우, 지자체 봄 축제 및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예약취소·고객감소 등 예상치 못한 불황을 겪고 있음
- 회사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했고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연차사용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도출되고 있음
- 회사는 국가지원정책인 ‘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’을 받기 위한 일환으로 기사들이 지자체에 버스 번호판을 반납(휴업 증명방법)하도록 하고 있음

- 무급휴직 및 연차사용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처리한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이 70%를 지급해야 하고, 무급휴직 일수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음
- 참고로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’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재고량 50% 증가, 생산량·매출액 15%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때에 이를 하였으나, 최근 요건을 완화하여 매출액 15%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‘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

○ 택시업계 임금삭감 등 징계 사례

- 2020.1.1.부터 택시업계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종전 사납금제의 변형인 기준성과급제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음(주간, 야간, 1인 1차 : 1일 기준액 167,000~207,000).
- 보편적으로 2월~3월 비수기를 맞은 택시업계에 코로나 발생으로 승객수가 급감해 12시간을 운전해도 높은 기준액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들을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징계처분(승무정지) 또는 임금삭감 등의 조치를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

- 승무정지의 징계처분 등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, 우리 센터에서는 권리구제 지원을 하고 있음

○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이유로 노동조합활동 방해 사례

- 사내하도급의 자회사 전환에 맞서 정규직화 투쟁 중이며 연차를 이용해 본사 앞 상경 투쟁 진행 중
- 3월 16일 회사로부터 서울지역이 코로나19 확진 위험지역이라는 이유로 서울지역 방문 연차휴가 제한에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 측(사내하도급 3사 대표 명의로)은 회사 내 감염예방을 이유로 상경 집회 참가자에 대해 출근 전 지정병원에서 검사 후 ‘코로나 판정 확인서’를 제출할 것과 미제출시 출근 불가 공문 발송
-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발열 체크에 협조하고 있으므로 노조만 따로 선별하는 것은 차별로 부당하며, 검사 진행 시간을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하면 협조하겠다고 이의 제기하자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노동조합에 묻겠다고 함
-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들도 업무시간 외에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나 동일한 조치를 하지 않음(상경 투쟁 당시 회사 측 관리자가 감시 차 상경하여 활동하고 다음 날 별다른 조치 없이 출근하였음에도 조합원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조치를 함
- 코로나 감염예방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을 차별하며, 현장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임

- 서울지역이 코로나19 확진 위험지역이라는 이유로 서울지역 방문 연차휴가 제한 및 방문한 경우 코로나 판정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실만으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이지 않음
- 다만,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들은 동일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, 상경 투쟁 당시 회사 측 관리자가 감시 차 상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
- 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·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

II. 전국 현황(직장갑질119 상담 동향)

□ 직장갑질 119, -코로나갑질 특별대책반 가동

-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발생 이후 일어난 직장갑질 현황에 대해 '직장갑질 119'의 조사결과를 소개함
-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에 출범, 2020년 3월 현재 140여명의 노동전문가, 노무사, 변호사들이 무료 활동 중
 - 3월 9일부터 코로나갑질 특별대책반을 운영, 48시간 이내 답변, 심각한 제보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지원, 언론제보, 근로감독청원 등을 지원
 - 오픈카톡 상담, 이메일 답변, 밴드 노동 상담,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
- 코로나 제보 3월 1~3주 제보 2451건 중 코로나갑질 938건(36.9%)
 - 갑질의 패턴 혹은 보이는 특징은 연차강요에서 시작하여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며 3월 1주에서 3주까지 들어온 총 제보 2541건 중 코로나 관련 제보는 983건으로 36.9%차지함

		일반 상담 (건)	코로나갑질 (건)						상담 총계 (건)
			합계	무급 휴가	연차 강요	해고 권고사직	임금 삭감	불이익 (기타)	
1주 (1일-7일)	건	526	247	109	35	21	25	57	773
	비율	68.0%	32.0%	14.1%	4.5%	2.7%	3.2%	7.4%	100.0%
	코로나 비율		100.0%	44.1%	14.2%	8.5%	10.1%	23.1%	
3주 (15일-21일)	건	542	315	117	43	67	28	60	857
	비율	63.2%	36.8%	13.7%	5.0%	7.8%	3.3%	7.0%	100.0%
	코로나 비율		100.0%	37.1%	13.7%	21.3%	8.9%	19.0%	
증감 (배)		1.0	1.3	1.1	1.2	3.2	1.1	1.1	1.1

[출전: 직장갑질119 3월3주차 코로나갑질통계사례 긴급대책]

- 직장갑질119가 3월 1일부터 같은 달 21일 3주 동안 상담 이메일 전수 분석 결과, 갑질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
 - 항공업에서 시작한 코로나 실업대란은 학원교육, 병원, 사무, 판매 등 정부의 '특별고용지원업종'에도 포함되지 않는 무급휴직, 해고 등이 심각하게 일어난

	학원 교육	병원· 복지시 설	사무	판매	서비 스	생산직	숙박음 식점	항공 ·여행	미확 인	합계
합계	20	13	15	13	9	5	10	12	16	113
비율(%)	17.7	11.5	13.3	11.5	8.0	4.4	8.8	10.6	14.2	100.0

[출전: 직장갑질119 3월3주차 코로나갑질통계사례 긴급대책]

□ 고용유지지원 등의 대책 필요

-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소득 보전을 해주고 있음
 - 프랑스는 코로나19 실업수당으로 급여의 84%를, 영국은 휴업수당의 80%를 각각 국가가 지원하기로 하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노동자의 생계보장에 나서고 있음
-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노동자 대책은 정규직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밖에 없음
-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위기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한 '노동소득보전금'을 소득이 감소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
 - 평균임금이 200만 원인 노동자의 경우 휴업급여(140만 원)와 고용유지지원금(105만 원, 75%)을 받게 될 경우, 노동자의 고통분담금은 60만 원, 회사의 분담금은 35만 원이 되나,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되면 회사부담금이 14만 원을 줄어들게 됨
- 여기서 문제는 회사가 계약직, 파견직, 하청직,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점
 - 따라서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가 정부에 '노동소득보전금'을 신청하면 정부는 우선 지급하고, 회사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면 됨

- 노동소득보전금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을 기준으로 휴업급여(평균임금 70%)×90%= 평균임금의 63% 이상으로 정할 경우, 정부의 추가지원 없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함
- 코로나19로 발생한 재난위기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여야 하며, 특히 저소득층 등 사회약자계층에 대한 두터운 배려와 관심이 요구됨

	급여액	평균임금 (200만원 기준)	대상	기업 부담금	노동자 부담금	최저임금 대비
휴업급여	평균임금 70%	1,400,000	5인이상 근로계약			78%
고용유지지원금	휴업급여 75%	1,050,000	1인이상 근로계약	350,000	600,000	58%
(특별고용지원업종)	휴업급여 90%	1,260,000	해당 업종	140,000	600,000	70%
노동소득보전금 (특별업종 고용유지지원금)	평균임금 63%	1,260,000	모든 취업자	없음	740,000	70%

[출전: 직장갑질119 3월3주차 코로나갑질통계사례 긴급대책]